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발의일자 : 2007. 6. 14
발 의 자 : 한승정 의원의 13

1. 제안사유

-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외받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 병원, 약국 이용 시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“저소득 노인계층” 이라 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자 중 사하구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말한다.
(안 제2조)
- 나.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구지역 가입자이며,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.(안 제3조)
- 다.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본예산 편성
- 다. 입법예고 : 2007. 6. 15 ~ 2007. 7. 5 (20일간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워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소득 노인계층”이라 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자 중 사하구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구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.

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제4조(지원시기)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시기는 연중으로 하되,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해당 월 말일까지 지원한다.

제5조(대상자 선정)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받아 구청장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

제6조(조사실시)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,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예산 확보)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

비용소요 추계서**□ 연도별 국민건강보험료 10,000원 미만 노인 현황**

연도별	65세 이상 노인		건강보험료 10,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(명)
	인구수(명)	증가율(%)	
2007년	28,153	-	741
2008년	31,427	1.1162	827
2009년	33,962	1.0806	893
2010년	36,950	1.0879	971
2011년	39,491	1.0687	1,037

※ 건강보험료 10,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는 인구 증가율을 적용한 추계 숫자임

□ 연도별 10,000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소요재원 추계

구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
월간(원)	3,435,440	3,834,150	4,140,140	4,501,760	4,807,760
연간(원)	20,612,640	49,230,480	53,159,390	57,802,590	61,731,630

※ 2007년분은 7월부터 시행할 경우 6개월만 적용

【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율】

2006년 ⇒ 7.5% , 2007년 ⇒ 6.5% 인상분을 산술평균하여

2008년도부터 매년 「7%」 씩 적용한 추계 숫자임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

비용소요 추계서

□ 연도별 국민건강보험료 5,000원 미만 노인 현황

연도별	65세 이상 노인		건강보험료 5,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(명)
	인구수(명)	증가율(%)	
2007년	28,153	-	241
2008년	31,427	1.1162	269
2009년	33,962	1.0806	315
2010년	36,950	1.0879	342
2011년	39,491	1.0687	365

※ 건강보험료 5,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는 인구 증가율을 적용한 추계 숫자임

□ 연도별 5,000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소요재원 추계

구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
월간(원)	787,240	940,200	1,100,980	1,195,360	1,275,750
연간(원)	4,723,440	11,282,400	13,211,760	14,344,320	15,309,000

※ 2007년분은 7월부터 시행할 경우 6개월만 적용

【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율】

2006년 ⇒ 7.5% , 2007년 ⇒ 6.5% 인상분을 산술평균하여

2008년도부터 매년 「7%」 씩 적용한 추계 숫자임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고 제2007-6호

조례안 예고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. 6. 15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

1.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

2. 제정취지

-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외받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- 병원, 약국 이용 시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“저소득 노인계층”이라 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자 중 사하구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말한다.
(안 제2조)

나.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구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.(안 제3조)

다.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(안 제7조)

4. 조례 제정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(참조 : 사무국장)에게 제출하거나 전화(220-4092), FAX(220-4099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○ 제 출 의 건

항 목 (조문 및 내용)	찬성 여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○ 기타 참고사항 :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워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소득 노인계층”이라 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자 중 사하구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구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.

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제4조(지원시기)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시기는 연중으로 하되,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해당 월 말일까지 지원한다.

제5조(대상자 선정)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받아 구청장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

제6조(조사실시)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

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,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예산 확보)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

비용소요 추계서

□ 연도별 국민건강보험료 10,000원 미만 노인 현황

연도별	65세 이상 노인		건강보험료 10,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(명)
	인구수(명)	증가율(%)	
2007년	28,153	-	741
2008년	31,427	1.1162	827
2009년	33,962	1.0806	893
2010년	36,950	1.0879	971
2011년	39,491	1.0687	1,037

※ 건강보험료 10,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는 인구 증가율을 적용한 추계 숫자임

□ 연도별 10,000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소요재원 추계

구 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
월간(원)	3,435,440	3,834,150	4,140,140	4,501,760	4,807,760
연간(원)	20,612,640	49,230,480	53,159,390	57,802,590	61,731,630

※ 2007년분은 7월부터 시행할 경우 6개월만 적용

【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율】

2006년 ⇒ 7.5% , 2007년 ⇒ 6.5% 인상분을 산술평균하여

2008년도부터 매년 「7%」 씩 적용한 추계 숫자임